



특허청

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25.(일) 낮12시	배포 일시	2022. 12. 23.(금) 14:30
담당 부서	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	책임자	과 장 박양길 (042-481-5232)
		담당자	주무관 김수연 (042-481-5235)

## 특허·상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, 한 눈에 보기 쉽게 변화합니다.

- 주요 정보는 강조하고,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-

◆ (사례) 특허권자 A씨는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연차등록 납부안내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. 현재 안내서에는 많은 안내사항이 줄글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. 하지만 새로운 안내서는 권리자가 궁금해할 만한 핵심정보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붉은색으로 강조하고 있어, 이전보다 이해하기 쉽고, 등록료를 빠르게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.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**2023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- 연차등록 납부안내서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**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**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.
- 기존 안내서는 **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**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,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인 **‘권리 소멸 주의 안내’가 특색 없이 표기**되어 있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.
-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의 **내용 배치를 재구성**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권리자가 **납부정보를 쉽게 파악**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**납부금액, 납부기한, 납입계좌** 등을 안내서 **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** 제공하고,
-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**납부방법에 관한 사항**을 일관성 있게 **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**하고 **자세한 설명도 추가**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한편, 직접적인 등록료 납부 정보 외에 **권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**를 제공하기보다는 특허고객에게 **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**하였으며,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**권리 소멸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강조**하였다.
-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,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**납부기한 준수 및 권리소멸 주의 문구**를 눈에 띄게 **붉은색 상자로 강조**하여 안내함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**권리 소멸을 예방**하고자 하는 것이다.
-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“이번 납부안내서 개편은 특허고객에게 **편의를 제공하고 주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**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**고객친화적인 특허행정 서비스**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”라고 전했다.

※ 붙임 :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개선안(예시)



연차등록료 정상납부 안내서(기존)

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

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정등록 4년차부터 권리 존속 기간 만료일까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고객님께서 **까지 납부하지 않고**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실 경우에는 납부 금액이 가산됩니다. **만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인** **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정상납부 만료일 다음날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**  
 (근거법령: 특허법 제81조 제3항, 실용신안법 제20조,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3항)

권리 소멸시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명 별지 제25호서식 납부서(회복신청 원인 기재)와 회복등록료 (정상납부금액의 2배)를 납부하여야 권리가 회복됩니다.

※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뒷면하단 참조

권리

제분

존속기간만료(예정)일

발명의 명칭

납부기간의 만료일 및 납부등록료



연차등록료 정상납부 안내서(개선)

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

- 발명의 명칭 :
- 존속기간만료(예정)일 :
- 특허고객번호 :

납부 기한

납부 등록료

입급전용계좌

(입회성 계좌이므로 차년도 연차료 납부 시 사용될 수 없습니다.)

유의사항

- 등록료는 권리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공동권리인 경우 권리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되니, 중복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상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,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며, 매월 3%씩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. 추가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해당 권리는 소멸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, 특허고객 상담센터(1544-808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